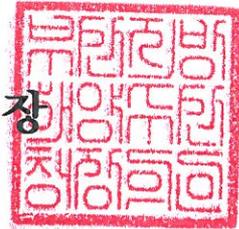


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

방치선박 등이 우리청 공유수면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,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 등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**2023년 11월 22일까지**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8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

1. 공고 기간: 2023. 11. 8. ~ 2023. 11. 22.(14일간)
2. 제거 대상: (‘붙임’ 참조)
3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해당 선박 등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이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,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4. 기타사항: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(☎051-609-6549)로 연락 바랍니다.
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3 -44호

방치선박등제거공고

발견장소	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461-2번지 지선 공유수면			
선박 제원	선명(소유자)	미상	선박번호	-
	선적항	-	톤수	1톤 미만
	주요치수	-		
관리청	부산지방해양수산청	관리번호	제2022-4호	
제거예정일자	2023년 11월 22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			
제거방법	직권 제거(폐기 처리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보증금	-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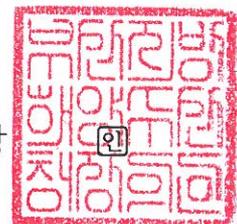
방치물
전경사진



위 방치물은 FRP어선 파손 자재로 추정되며, 관계기관 대상 소유자 탐문하였으나 확인 불가합니다. 해당 방치물로 인하여 경관 훼손, 해양오염 우려 유발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**2023년 11월 22일까지**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(☎ 051-609-6549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22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

(담당자: 김지수 주무관, 전화번호: 051-609-6549)